

격무·기피부서 가점 기준(제26조 관련)

구 분	지 정 부 서	대상 계급	가 점	비 고
본 부	• 기획협력과 • 특수대응훈련과 • 특수장비과 • 중앙소방항공대(행정반) • 119구조견교육대(행정반) • 인사명령에 따른 상설 TF	소방정 이하	월 0.03점 (총 2점 이내)	소방청 지원근무자, 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자의 경우 월 0.05점
119 특수구조대	• 행정반			
기 타	• 독도119구조 · 구급대	소방위 이하		
비 고	1. 지정부서의 일근 근무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. 2. 기간 산정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임용일 기준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며, 15일 미만은 절사한다. 3. 가점적용은 현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.			